

증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[2015. 12. 18]

일부개정 2017. 12. 28 조례 제791호
(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<개정 2017. 12. 28>

1. “어린이놀이기구”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, 미끄럼틀, 공중놀이기구,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「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」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.
2. “어린이놀이시설”이란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2조의 시설 중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관리·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.
 - 가.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 - 나. 「도로법」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
 - 다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
 - 라. 「식품위생법」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
 - 마.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
 - 바.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
 - 사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
 - 아. 「의료법」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
 - 자. 「주택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
 - 차.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
 - 카.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용

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」으로 정하는 시설

3. “관리주체”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,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의 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.
4. “정기시설검사”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 제11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.
5. “담당부서”란 제2호 각 목의 법령 또는 「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의 사무분장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)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
2.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 점검에 관한 사항
3.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
4.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, 위생상태, 잔류세균, 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
5. 모래장의 정비(교체, 뒤집기, 보충 등)
6.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
7.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
8.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
9.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

제4조(행위의 제한)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,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1. 흡연, 음주, 가무, 방뇨 행위
2. 개, 고양이, 닭 등 가축을 풀어놓는 행위, 애완동물의 목줄 미착용·배설물 미수거·방치 행위 등
3. 자동차,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·정차 행위
4.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(수목, 안전표지판 등) 훼손(파손) 행위
5.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
6. 그 밖에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

제5조(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)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안전 및 위생점검) ①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다.

제7조(점검결과 조치 등) 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.

제8조(자원봉사활동 등)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‘놀이시설지킴이’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,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(예산 확보 및 지원)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의 경우, 관리주체에 법 제12조의 정기시설 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 단,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다.

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증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

제10조(표창)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 실적이 우수한 개인·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11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2. 28 조례 제791호,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